



## 문화체육관광부



수신 종교단체 대표  
(경유)

제목 중대재해처벌법 대상(시설물안전법 관련 공중이용시설) 현황 통보 및 협조요청

---

1.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-509(2022.1.17.)호 관련입니다.
2. 사업주, 법인 및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안전의무를 미이행하여 이를 원인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,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이 '22.1.27.부터 시행됩니다.
3. 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인 공중이용시설 중 시설물안전법 관련 시설 현황(붙임1)과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(붙임2)를 송부하오니, 해당 기관에서는 대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아래와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가. 대상시설

- (공중이용시설) 시설물안전법 대상 제 1·2종 시설물
  - 중대재해처벌법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공중이용시설 [별표3]
  - \*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(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)의 종교시설

### 나. 협조요청

- 시설물 관리주체는 적기에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시설물 정보관리종합시스템(FMS)에 오기입된 사항을 수정하는 등 시설물 철저 관리
- 시설물 운영·관리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해설서를 숙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 사항 준수

- 붙임 1. 시설물안전법 상 제 1,2종 시설물 현황(건축물-종교시설) 1부.  
2.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1부. 끝.

문화체육관광부 장관



주무관 박승화 서기관 최재환 종무1담당관 전결 2022. 1. 19. 강성태

협조자 종무2담당관 윤양수

시행 종무1담당관-210 (2022. 1. 19.) 접수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제15동 . / <http://mcst.go.kr>

전화번호 044-203-2316 팩스번호 044-203-3462 / [psw0113@korea.kr](mailto:psw0113@korea.kr) / 대국민 공개

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